

##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12. 8. 1.(수)

## 2.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 4. 불참위원 : 없음

## 5. 회의내용

## ① 서면회의 사유

- o 의결 가 ~ 의결 사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제2009-30차 전원회의('09.7.9), 제2010-1차 전원회의 ('10.1.14), 제2011-17차 전원회의('11.3.21)에서 의결한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 · 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에 해당됨
  - o 의결 아 ~ 의결 차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 제1항제2호에 따른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됨
  - o 보고 가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의1(서면보고)제1항에 따른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안건에 해당됨

## ② 의결사항

- 가.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주)씨제이헬로비전 등 52개사  
- (2012-43(서)-168)

- o 「방송법」 제77조제1항에 의거, (주)씨제이헬로비전 등 52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이용요금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함
- o 주요 내용

### < 승인내용 >

법인명/상호	상 품 명	기존 상품내용	신청내용
(주)씨제이헬로비전 계열 15개사*	가족형 등 6개 상품	SO별 1~3개 아날로그 뮤음상품	뮤음상품별 1~3개 채널수 축소
금강방송(주)	기본형	아날로그 뮤음상품	2개 채널 축소
(주)한국케이블 TV제주방송	기본형	기본형 등 아날로그 8개 뮤음상품	상품 폐지
	유료채널	캐치원 등 2개 채널	상품 폐지
(주)씨앤앰 계열 17개사**	데이터방송	프리미엄 VOD	극장동시개봉영화 요금 인상
(주)현대HCN 계열 8개사***	데이터방송	프리미엄 VOD	극장동시개봉영화 요금 인상
개별 SO 10개사****	데이터방송	프리미엄 VOD	극장동시개봉영화 요금 인상

\* **씨제이헬로비전 계열 15개사 :** (주)씨제이헬로비전, (주)씨제이헬로비전은평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드림씨티 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북인천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증부산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중앙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금정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경남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기야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마산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영남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이라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충남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영동방송

\*\* **씨앤앰 계열 17개사 :** (주)씨앤앰, (주)씨앤앰중랑케이블티브이, (주)씨앤앰송파케이블티브이, (주)씨앤앰중앙케이블티브이, (주)씨앤앰구로금천케이블티브이, (주)씨앤앰서초케이블티브이, (주)씨앤앰노원케이블티브이, (주)씨앤앰동서울케이블티브이, (주)씨앤앰마포케이블티브이, (주)씨앤앰북부케이블티브이, (주)씨앤앰서서울케이블티브이, (주)씨앤앰용산케이블티브이, (주)씨앤앰경동케이블티브이, (주)씨앤앰경기케이블티브이, (주)씨앤앰우리케이블티브이, (주)씨앤앰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주)씨앤앰강남케이블 티브이

\*\*\* **현대HCN 계열 8개사 :** (주)현대HCN서초방송, (주)현대HCN동작방송, (주)현대HCN, (주)현대HCN부산방송, (주)현대HCN금호방송, (주)현대HCN새로넷방송, (주)현대HCN경북방송, (주)현대HCN충북방송

\*\*\*\* **개별SO 10개사 :** (주)씨앤앰울산케이블티비, 대구케이블방송(주),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티씨엔대구방송(주), 남인천방송(주), (주)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주), (주)한국케이블TV나라방송, (주)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주)서경방송

-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주)씨제이헬로비전 등 18개사  
- (2012-43(서)-169)

- o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주)씨제이헬로비전 등 1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설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

o 주요 내용

법인명/상호	변경사항	신청 주요내용
(주)씨제이헬로비전 계열 16개사 *	운용채널 및 시설변경	- 아날로그 채널 일부를 디지털 채널로 활용하기 위한 장비 변경 - 디지털 방송품질 향상을 위한 노후 장비 교체
(주)충청방송	"	- 아날로그 채널 일부를 디지털 채널로 활용하기 위한 장비 변경
(주)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	- 아날로그 채널 일부를 디지털 채널로 활용하기 위한 장비 변경

\* (주)씨제이헬로비전, (주)씨제이헬로비전은평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북인천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중부산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중앙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금정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경남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마산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영남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아라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충남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영동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신라방송

다.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 (2012-43(서)-170)

- o 「방송법」 제77조제1항에 의거,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SkyChoice 2D 영화서비스(PPV) 이용요금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함.

o 주요 내용

< 승인 내용 >

상 품 명 PPV(Pay Per View)	내 용	동시개봉	이용요금	비고
프리미엄 (최신영화)	영화물 (2D)	극장 동시상영 서비스	10,000원	편당구매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 (주)신우커뮤니케이션 등 2개사

- (2012-43(서)-171)

- o 「방송법」 제9조제5항 및 제15조제1항에 의거, (주)신우커뮤니케이션 등 2개사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

o 주요 내용

< (주)신우커뮤니케이션 등록 내용 >

채널명	방송 유형	방송분야	대표자	최다액 출자자 (지분율)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엠 클래식 티브이 (M CLASSIC TV)	TV	영화	윤형진	지석인(40%) 박숙민(40%)	5.2억원 (5.2억원)

< (주)한국낚시채널 변경등록 내용 >

채널명	방송유형	변경사항 : 방송분야	
		변경 전	변경 후
에프티브이 (FTV)	TV	낚시	낚시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 (TV전자상거래 포함)

마. 기간통신사업자 합병 인가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 (주)티브로드 낙동방송의 (주)동서디지털방송 합병 - (2012-43(서)-172)

-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주)티브로드 낙동방송의 (주)동서디지털방송에 대한 합병 인가 및 변경허가 신청 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합병법인(존속법인) : (주)티브로드 낙동방송(대표자: 이상윤) >

주요사업	사업권역	주요주주(5%이상)	경영현황('11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종합유선방송(37만명) 초고속인터넷(6만명)	부산 광역시	(주)티브로드 한빛방송 100%	207억원	734억원 (통신 126억원)	184억원

< 피합병법인 : (주)동서디지털방송(대표자: 이상윤) >

주요사업	사업권역	주요주주(5%이상)	경영현황('11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종합유선방송(9만명) 초고속인터넷(400명)	부산광역시 서구, 사하구	(주)티브로드 낙동방송 100%	50억원	84억원 (통신 1억원)	24억원

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에 관한 건 - (2012-43(서)-173)

- 주민번호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 (지정신청방법) 본인확인기관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준 증명자료, 정관 또는 규약, 재무제표를 준비하여 방통위에 제출토록 함(안 제3조)
  - (심사계획 수립) 방통위가 지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정심사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4조)
  - (심사기준) 지정심사시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안 제6조)
  - (심사방법) 지정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심사결과 세부 심사기준에 적합한 지정신청기관은 지정대상기관으로 선정(안 제7조, 제8조)
- 지정심사는 지정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고, 3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심사위원의 구성)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안 제9조)
- (심사결과 통보)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여부는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안 제10조)
  - 방통위는 지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지정신청기관에게 통지하나,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 연기 가능
- (사후관리) 방통위는 사후에 본인확인기관의 심사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 요구 가능(안 제12조)
- (본인확인기관의 의제)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은 본인확인기관으로 봄(안 제13조)
- (휴지·폐지)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폐지하려는 경우 휴지·폐지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 ~ 제15조)
  - 이용자에게 통보 시에는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등을 통해 하도록 함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부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설정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삭제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등에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 망분리 방식을 적용토록 함
  - o 향후일정
    - 관보게재 및 시행 : '12.8월

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 (2012-43(서)-174)

- o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시 가중·감경을 위한 필수적 조정 및 추가적 조정에 대한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o 주요 내용

① 과징금 산정절차 및 기준 (안 제2조 ~ 제3조)

-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 주도 여부, 관련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을 거쳐 산정하도록 규정

② 과정금의 필수적 조정 (안 제4조)

- 필수적 조정 금액은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하도록 규정

③ 과정금의 추가적 조정 (안 제5조)

-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고의 · 과실 여부, 조사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도록 규정

o 향후 일정

- 관보게재 의뢰 : '12년 8월 7일

아. 한국방송공사의 'KBS 뉴스 9' 재심에 관한 건 - (2012-43(서)-175)

- o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방송법」 제100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한 'KBS 뉴스 9' 프로그램 제재조치 처분('12.5.15)에 대한 한국방송공사의 재심 청구('12.6.13)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처분대로 '주의'를 명하기로 의결함

< 원심 주요내용('12.5.15) >

▪프로그램	KBS-1TV 'KBS 뉴스9' (2012.2.8.수, 21:00-22:00)
▪제재조치	주의 (광고효과의 제한 조항 위반)
▪위반내용	<p>○ 스크린 골프의 기술 발전에 대해 보도하면서,</p> <p>    ① “드로샷과 페이드샷 등 고급 기술까지 인식”, “벙커와 러프 매트도 만들어 손맛을 느끼게 한 것도 특징”이라는 등 해당 제품의 특장점 언급과 함께</p> <p>    ② 특정 업체(골프존)에서 출시한 신제품(골프존 비전)의 홍보영상을 보여주는과정에서 제품명을 2차례 노출하는 한편,</p> <p>    ③ 제품 광고모델이자 개발 참여자인 프로골퍼(김혜윤)가 “구질이 너무 흡사하게 구현 돼서 놀랐고, 연습을 여기서 해도 될 정도”라는 인터뷰와 업체 대표자의 인터뷰 장면에 ‘○○○ 골프존 회장’이라는 자막고지 등을 방송하여</p> <p>「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함</p>

자.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건 - (2012-43(서)-176)

- o 수도권 지역의 자막고지방송 강화, 비수도권 지역의 순차 종료 추진 등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정책 개선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o 주요 내용(추진방안)

- ① 수도권 지역의 자막고지방송·가상종료 강화

- 자막고지방송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11월에는 화면비율 50%로 상시 자막고지방송을 실시한 후 12월 21일부터 상시 가상종료로 전환

- 금년 12월 31일에 수도권 지역의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고 미전환가구 지원을 위해 '13년 3월까지 정부지원 신청·접수 실시

## ② 非수도권 지역의 순차 종료 추진

- ①지역별 보급률, ②정부지원 신청규모, ③민원추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상시 가상종료를 실시하고, 아날로그방송을 순차 종료
  - 지역별 상시 가상종료 및 아날로그방송 종료일시는 자막고지방송추진단에서 방송사·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
- 종료일시 관련 시청자 혼란 방지를 위해 지역별 종료일시를 해당 지역뉴스·특별 프로그램, 공익광고 등을 통해 집중 홍보
  - 자막고지방송 등을 통해서도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종료일자 안내

## ③ 정부지원 대상 확대

- 자막고지방송과 아날로그방송 종료로 TV시청에 불편을 겪는 전체가구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정부지원 대상을 확대
  - 유료방송에 가입했거나 DTV를 보유한 가구 중에서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아날로그TV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도 정부지원 실시
  - 일반 가구, 노인·장애인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지원대상	2nd TV 아날로그방송 직접수신가구		
	일반 가구	노인·장애인 가구	저소득층 가구
지원내용	·컨버터(자부담 2만원) ·안테나(자부담 3만원)	·컨버터(자부담 2만원) ·안테나 무상 설치	·컨버터 무상 지원 ·안테나 무상 설치

## 차. 2012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요구에 관한 건 - (2012-43(서)-177)

- o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지원,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 차세대 방송통신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R&D) 사업의 증액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한 2012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o 주요 내용

### <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당초(A)	변경안(B)	증감(B-A)	주요 증액 내용
①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18,000	20,500	2,500	
② 경쟁력강화 우수프로그램 (3D 콘텐츠) 제작지원	11,000	12,500	1,500	3D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당초) 10편 → (변경) 13편
③ 공공·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지원	3,500	4,500	1,000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지원 확대 (당초) 35편 → (변경) 45편

사업명	당초 (A)	변경안 (B)	증감 (B-A)	주요 증액 내용
②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지원	1,415	3,015	1,600	
o 망 적합성 통합인증센터 구축	-	1,600	1,600	단말기 자급제 지원을 위한 망 적합성 통합인증센터 구축
③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	27,600	30,600	3,000	
o 방송기자재 구입	1,490	4,490	3,000	방송장비 HD 전환 기간 단축 (당초) '18년 → (변경) '16년
④ 차세대 방송통신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R&D)	1,980	4,000	2,020	
o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 분야 기술지원 환경구축	1,580	3,600	2,020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분야 기술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확대
여유자금 운용	268,164	259,044	△9,120	사업비 증액분을 여유자금에서 충당

### ③ 보고사항

#### 가.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등 일괄개정에 관한 사항

- o 재검토기한이 도래('12.10월말)하는 행정규칙 중 재검토기한의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규칙 일괄개정(안)을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o 주요 내용
  - 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해당 행정규칙 총 39건(고시 33건, 규칙 1건, 훈령 5건)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함
    - 재검토기한 연장 : “2012년 10월 31일” → “2015년 10월 31일”
  - ② 서식 추가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을 정비함
- o 추진계획
  - 행정예고 : '12. 8. 7 ~
  - 자체규제심사 및 종리실 규제심사 : '12. 8. 7 ~
  - 위원회 의결 및 발령 : '12. 10월 중